

광주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가단18793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피고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현

변론 종결 2021. 3. 16.

판결 선고 2021. 4. 6.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2020. 8.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20. 8. 6. 접수 제835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 (1) 원고는 2013. 3. 25.경 C에게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었고, C은 신용카드를 이용하던 중 2017. 9.경부터 대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2020. 11. 17. 기준으로 원고에게 29,120,188원의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 (2) D은 2010. 11. 16. 사망하였고(이하 망 D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 G, H, C이 있었다(C의 법정상속분 2/13).
- (3) 망인의 상속인들은 2020. 8. 5.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곡성등기소 2020. 8. 6. 접수 제835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곡성군수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의 성립

- (1) 원고의 C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2010. 11. 1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임을 들어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이가 2010. 11. 16. 이루어졌고,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은 그 후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등기와 그 경정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675호)에 의하면,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그 연월일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원인의 연월일로 기재된 "2020. 11. 16."은 망인의 사망일이고,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들이 2020. 8. 5.자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다2788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였거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무자력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C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의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C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C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은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특별할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2) 피고는 2017년 C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적이 있었고, 그 이후로는 C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2017. 5. 25. C의 원고에 대한 채무 20,165,089원, I카드에 대한 채무 18,893,379원을 각각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각 2/13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C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옥희

별지